1. 法人稅法 施行規則中 改正令

財務部令 第1844號 1991年 2月 28日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중 "납세지와 납세지지정통지"를 "납세지와 납세지지정 통지등"으로 하고, 동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영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62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①영 제14조제4항에서 "유가증권처분익"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②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전에 임대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의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당해 임대보증금등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영 제3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지출금은 법인이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으로 한다.

제1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영 제3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2중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18조제1항제1호·동조제2항 및 동조제3항"으로 하고, "법 제18조제2항각호의"를 "법 제18조제3항각호의"로 한다.

제16조제1호 본문·동호가목 및 나목중 "법 제18조제2항"을 각각 "법 제18조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법 제18조제1항"을 각각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에 제27호 내지 제2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에 시설비·연구비·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8. 비영리법인이 설립한 도서관으로서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도서관의 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9.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및 그 산하조직에 사업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43조의2제2항에서 "서화·골동품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각호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비업무용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서화·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회통상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것을 제외한다.
2.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3. 제3항 내지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등과 관련된 시설물(입목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설비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산

제18조제3항 본문 및 동항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5호가목중 "염전·광천지"를 "광천지"로 하며, 동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 **제43조**의2제1항 및 동조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1.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 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 다만, 정부가 인가한 외국인투자의 조건에 따라 외국인과 합작투자를 하는 자가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건

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제외한다.

다.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

21. 염전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4에 미달하는 부동산

제18조에 제17항 내지 제2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⑰영 제43조의2제8항 후단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다음의 가액을 말한다.

1.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

⑱영 제43조의2제9항제9호에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이라 함은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을 말한다.

⑲영 제43조의2제10항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영 제46조제2항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제2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금액
3.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외 가불금
4.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5.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

⑳법 제18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㉑영 제43조의2제1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각호의 부동산을 말한다.

1. 임야·농경지·묘포장용 부동산·목장용 부동산
2. 체육시설용 부동산
3. 연수원용 또는 휴양소용 부동산
4. 휴양시설업용 부동산
5. 예비군훈련장용 부동산
6. 골재채취용 부동산
7. 야적장·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부동산
8. 임대전용 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

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물 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9. 법인의 자기전용 주차장 및 주차장업용 토지

10. 상품등의 전시·판매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것(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상품 등을 전시·판매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제18조의2제1항중 "영 제43조제7호"를 "영 제43조제1항제7호"로, "동조제8호"를 "동조동항제8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 제43조제9호"를 "영 제43조제1항제9호"로, "법 제18조의2제4항"을 "법 제18조의2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영 제43조제10호"를 "영 제43조제1항제10호"로 하고, 동조에 제4항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43조제2항에서 "부동산임대업"이라 함은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업을 말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항공기·자동차 및 증기와 공장재단·광업재단을 제외한다.

⑤영 제43조제2항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3.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당해 주택임대사업에 한한다)

⑥영 제43조제3항에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오락·유흥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여행알선업 및 전세버스운송업

2.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유람선업

3. 목욕장업 및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

⑦영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지출액에는 자기가 생산한 제품등으로 제공한 것(별지 제55호서식(2) 접대비지출명세서(2)에서 현물접대비로 구분된 것에 한한다)과 영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모집권유비등을 제외한다.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영 제44조의4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해외광고선전비"라 함은 다음 각호

의 것을 말한다.

1. 국외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등 간행물에 의하여 광고·선전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2. 해외방송등 전파매체를 통하여 외국인에게 광고·선전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3. 기타 직접 외국인을 상대로 광고·선전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제20조제1항중 "영 제30조제3호 및 영 제33조"를 "영 제33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 제30조제3호·제33조 및 제47조"를 "영 제33조 및 제47조"로 하며,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소득금액의 조정신청서) 영 제46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조정신청은 별지 제63호서식에 의한다.

제45조제3항제14호를 삭제하고, 동항제8호 내지 제13호를 제9호 내지 제14호로 하며,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1호(종전의 제10호)·제20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7호를 제43호로 하고, 동항에 제37호 내지 제4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별지 제6-2호서식의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조정명세서
11. 별지 제6-4호서식(갑)(을)의 접대비등조정명세서(갑)(을)
20. 별지 제7호서식의 특별비용조정명세서
24. 별지 제10(2)호서식의 소득공제조정명세서
37. 별지 제60호서식의 적정유보초과소득조정명세서
38. 별지 제61호서식의 광고선전비조정명세서
39. 별지 제62호서식의 납세지신고서
40. 별지 제63호서식의 소득금액조정신청서
41. 별지 제2호서식부표의 최저한세조정계산서
42. 별지 제64호서식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

제45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법 제6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법인과세표준신고서에 별지 제64호서식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8조제7항제2호중 "법 제8조각호"를 "법 제8조제1항각호"로 한다.

제61조 및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부동산업등의 겸업법인의 구분경리방법) 법 제64조의2 및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부동산업 또는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서의 자산·부채, 수익·비용의 구분계산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1. 고정자산과 부채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증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구분계산한다. 이 경우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적수 및 재고자산의 적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 소비성서비스업 또는 부동산업의 차입금증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의 차입금은 임대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임대보증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text{당해사업연도중 차입금 증가액} \times \frac{\text{부동산업등의 건설가계정 및 고정자산의 적수}}{\text{재고자산의 적수} + \text{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

   나. 기타 사업의 차입금증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text{총차입금증가액} - \text{가목의 차입금증가액}$$

1.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감소액은 총차입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사업의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현금·예금등 당좌자산, 투자와 기타자산은 자금의 원천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4.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 및 잉여금 등은 용도, 발생원천 및 기업회계의 관행에 따라 계산한다.
5. 각 사업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은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되,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계산한다.

제62조(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영 제130조의2제1항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

〔별표 2〕사업용고정자산(기계·장치)의 내용연수표(갑)의 7. 비철금속제조업중 번호 0704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0704	전선·케이블제조설비	광통신케이블제조설비		7
		기타의설비		8

〔별표 2〕의 8. 금속제품제조업중 번호 0802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0802	재봉기제조설비			9

〔별표 2〕의 9. 기계제조업중 번호 090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0901	보일러제조설비			9

〔별표 2〕의 10. 전기기계기구제조업중 번호 1008란·1009란 및 101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08	전기용접기제조설비			7
1009	전용공구제조설비중자동화설비			8
1010	기타의 전기기기 및 동부분품 제조설비			8

〔별표 2〕의 27. 요업·토석제품제조업중 번호 2701란 및 2704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701	판초자제조설비	용해로		4
		원료투입·제품절단 및 포		10
		장설비		12
		기타의설비		
2704	시멘트제조설비	생산설비		10
		콘트롤시스템		
		운전자동화설비		9
		기타의 설비		11

〔별표 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의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유료도로관리권란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도시설관리권			30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관리권			25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3(1)호서식(갑)〕·〔별지 제3(1)호서식(을)〕·〔별지 제3(1)서식부표2〕·〔별지 제3(1)호서식 부표3〕·〔별지 제3(2)호서식〕·〔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6-2(2)호 서식〕·〔별지 제6-2(3)호서식〕·〔별지 제6-2(4)호서식〕·〔별지 제6-2(6)호서식〕·〔별지 제6-2(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2(8)호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6-2(9)호서식〕·〔별지 제6-2(10)호서식〕·〔별지 제6-2(11)호서식(갑)〕·〔별지 제6-2(11)호서식(을)〕·〔별지 제6-2(12)호서식〕·〔별지 제6-2(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4호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6-4호서식(갑)〕 및 〔별지 제6-4호서식(을)〕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6-6(2)호서식〕·〔별지 제6-6(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6-8호서식(갑)〕·〔별지 제6-8호서식(을)〕을 각각 삭제하고, 〔별지 제6-14호서식(갑)〕·〔별지 제6-14호서식(을)〕·〔별지 제6-14호서식(병)〕·〔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9호서식(갑)〕·〔별지 제10(1)호서식〕·〔별지 제10(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10(2)호서식 부표1〕을 삭제하고, 〔별지 제10(3)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4호(1)서식〕·〔별지 제15호서식(갑)〕·〔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41호서식〕·〔별지 제55호서식(1)〕·〔별표 제56호서식〕·〔별지 제57호서식(갑)〕·〔별지 제5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60호서식〕·〔별지 제61호서식〕·〔별지 제62호서식〕·〔별지 제63호서식〕 및 〔별지 제6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8호의 개정규정은 도서관진흥법의 시행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성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업무용부동산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제11호·제15호 및 제2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부표〕·〔별지 제3(1)호서식(갑)〕·〔별지 제3(1)호서식(을)〕·〔별지 제3(1)호서식 부표1〕·〔별지 제3(1)호서식 부표2〕·〔별지 제3(1)호서식 부표3〕·〔별지 제6－2(2)호서식〕 내지 〔별지 제6－2(13)호서식〕·〔별지 제6－6(2)호서식〕·〔별지 제6－6(3)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10(1)호서식〕·〔별지 제10(2)호서식〕·〔별지 제10(2)호서식 부표1〕·〔별지 제14(1)호서식〕 및 〔별지 제6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협의취득주식에 관한 경과조치)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주식은 제18조제18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주식으로 본다.

제7조(부동산임대업의 구분경리에 관한 경과조치) 1991년 1월 1일 이전부터 부동산임대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가 어려운 법인의 경우 199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사업의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자산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액)에서 임대보증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text{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총차입금(용도가 분명한 차입금을 제외한다)} \times \frac{\text{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text{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총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과 제고자산의 가액의 합계액}}$$

2. 부동산임대사업의 자기자본은 자기자본의 총액에 총수입금액에서 부동산임대사업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기장할 수 있다.

3.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임대에 사용되고 있는 자산의 가액을 구분하여 기장하며, 고정자산외의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자금의 원천 및 기업회계의 관행에 따라 적정하게 구분계산한다.

◀ 개정이유 ▶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1990. 12. 31. 법률 제4,282호,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됨에 따라 이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대용부동산 등에 대한 비업무용판정기준을 보완하고, 첨단·자동화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단축하는등 현행 규정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비영리법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의 시설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 공익성기부금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도서관등의 육성을 지원하도록 함(제17조).

나. 임대용부동산의 업무용판정기준이 되는 임대수입금액의 비율을 임대사업의 실태를 감안하여 현행 부동산가액의 7퍼센트 이상에서 3퍼센트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판정기준을 일부 보완함(제18조제3항제11호).

다.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다른 부동산업 법인과는 달리 일반법인과 같은 한도에서 접대비의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법인을 한국토지개발공사·대한주택공사 등으로 함(제18조의2제5항).

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일반법인에 비하여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접대비 등의 한도가 적은 바 이러한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에 여행알선업·관광유람선업 등을 추가함(제18조의2제6항).

마. 첨단·자동화설비등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단축함으로써 기업이 동 설비에 투자한 자본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함(별표 2). 〈재무부 제공〉